

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박 주 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4-51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4. 23.

발 의 자 : 박주선, 홍재희, 최세진,  
한상욱, 김현진, 고찬양,  
박학용, 이종숙

### 1. 제안이유

오늘날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저감에 앞장서는 환경보호 우수업소를 선정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 수립 범위에 대한 사항(안 제4조)
- 나. 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에 대한 사항(안 제7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- 나. 협조부서 : 자원순환과
- 다. 입법예고 : 2024. 4. 23. ~ 4. 29.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5호”를 “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5호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4. 환경보호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

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보호우수업소(이하 “우수업소”라 한다)로 선정할 수 있다.

1.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
2.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

로 줄인 경우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

2.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1회용품”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, 접시, 용기, 나무젓가락 등으로 「<u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제4조(저감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</p> <p>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 「<u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</u>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5호 ----.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저감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환경보호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<u>제7조(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)</u></p> <p>① <u>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보호우수업소(이하 “우수업소”라 한다)로 선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</u></p>

업소가 규제품목 외 1회용품  
사용을 줄인 경우

2.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 
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 
자발적으로 줄인 경우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 
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  
료를 부과받은 경우

2.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취지  
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  
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 
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하다  
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 
있다.

제7조 · 제8조 (생략)

제8조 · 제9조 (현행 제7조 및 제8  
조와 같음)

**□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**

제10조(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다만,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1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
2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·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
3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(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)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
4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
5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
6.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

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1.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·판매·배달하는 경우. 이 경우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·판매·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2.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
3.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

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